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최 미 애 의원 외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9년 4월 15일

○ 회부일자 : 2009년 4월 16일

3.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법률 조항을 개정하고 장애인 복지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기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충청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과 균형발전국장을 당연직으로 함(안 제3조)

나. 상위 관련법령 근거조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5.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정책추진과 관련된 공무원 2인을 당연직으로 위촉함과 동시에 일반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